

## 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

나. 분류 : 증권집합투자기구\_주식형

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1.03.25 ~ 2012.03.24

라. 집합투자업자 : 미래에셋자산운용

마.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유진투자증권, 한양증권, 메리츠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증권, HMC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NH투자증권, 골든브릿지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IBK투자증권, 토러스투자증권, KTB투자증권, 애플투자증권, 한맥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SC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, 외환은행, 광주은행, 부산은행, HSBC은행, 신한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금호종합금융, 수협중앙회, 현대해상화재보험, KDB생명보험, 미래에셋생명보험, KB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

※ 이 투자신탁은 보수구분에 따라 종류 C-A, 종류C-e가 운용되고 있습니다.

#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1.04.14	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소규모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사항),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확대-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	6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	6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
		(신설)	4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나.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

		투자하는 행위 다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마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-	--	--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	변경사유	성명	주요운영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11.12.28	신규	구용덕	-	2109000786
11.12.28	말소	김성우	-	2109001006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: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
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안진회계	1년	4,735,000	서면	변동없음	안진회계	1년	3,630,000	서면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: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: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: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 작성 대상 아님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: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음.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 
- 직전일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

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가치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적절히 산출하고 있음.
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.

#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우리은행 증권수탁부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)2002-4898

-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([www.kofia.or.kr](http://www.kofia.or.kr))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